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230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를 실현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 상위법령 명칭 변경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제15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7조)
- 배수설비를 개인이 직접 설치함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신설(안 제12조 및 12조의 2)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수용(안 제15조, 제27조, 및 제28조)
- 준용 규정 변경(제30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9. 8. 14. ~ 9. 3.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 후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장의 공사시행)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연막, 염료, CCTV 등” 을 “CCTV를” 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제1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 을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감면”을 “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2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감면기준”을 “감경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을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으로, “감면한다”를 “감경한다”로, “감면하지”를 “감경하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지방세 징수”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하 수 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하수과장 양 진 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장 선 자
자	담당자 성명·전화	박 정 애 (행정 245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p> <p>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p> <p>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p> <p>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p> <p>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설치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p> <p>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p>	<p>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 후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p> <p>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p> <p><삭 제></p>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 산출금액을 미리 내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2. (생략)

<삭 제>

제12조의2(시장의 공사시행)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CC
TV를 -----
-----.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

-----.

1.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5. 「장애인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6. (생 략)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다만, 한 세대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한 세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중복 감면하지 않는다.)

<신 설>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삭 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감정기준-----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
----- 감정
한다.-----

----- 감정하지 -----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

----- 지방세 징수-----
-----.

현	개
행	정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고
	사용량 (m ³ /월)	m ³ 단가(원)		
		2017. 7. 부터		
가정용	1 ~ 20	180		
	21 ~ 40	270		
	41 이상	410		
일반용	1 ~ 50	330		
	51 ~ 100	415		
	101 ~ 300	545		
	301 ~ 1000	605		
	1001 이상	630		
대중탕용	1 ~ 1000	290		
	1001 ~ 1500	350		
	1501 ~ 2000	435		
	2001 이상	510		
산업용	톤당	380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고
	사용량 (m ³ /월)	m ³ 단가(원)			
		2020.1.부터	2021년	2022년	
가정용	1 ~ 20	210	250	300	
	21 ~ 40	320	390	460	
	41 이상	490	590	700	
일반용	1 ~ 50	390	470	560	
	51 ~ 100	500	600	700	
	101 ~ 300	660	790	920	
	301 ~ 1000	740	890	1,040	
	1001 이상	780	950	1,110	
대중탕용	1 ~ 1000	340	400	480	
	1001 ~ 1500	420	510	610	
	1501 ~ 2000	520	630	750	
	2001 이상	620	750	890	
산업용	톤당	450	530	630	

2.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구분 업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함) ○ (생략)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2.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구분 업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의함) ○ (현행과 같음)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15조제3항)</p> <p>□ 대상항목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p> <p>□ 사용료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p>□ 수질하수도사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frac{1}{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당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15조제3항)</p> <p>□ 대상항목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p> <p>□ 사용료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p>□ 수질하수도사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frac{1}{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당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p>[별표 8]</p> <p style="text-align: center;">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중수도</td> <td></td> </tr> <tr> <td>가정용</td> <td>65</td> </tr> <tr> <td>일반용</td> <td>65</td> </tr> <tr> <td>대중탕용</td> <td>30</td> </tr> <tr> <td>산업용</td> <td>65</td> </tr> </tbody> </table> <p>주) 감면비율은 수도요금률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p> <p><계산 예></p> <p>1. 수도요금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65%인 경우 최종 수도요금은?</p> <p>= 수도요금(100원) - 감면액(100원×65%=65원)</p> <p>= 35원 (최종 수도요금)</p>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가정용	65	일반용	65	대중탕용	30	산업용	65	<p>[별표 8]</p> <p style="text-align: center;">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경기준 (제2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감경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중수도</td> <td></td> </tr> <tr> <td>가정용</td> <td>65</td> </tr> <tr> <td>일반용</td> <td>65</td> </tr> <tr> <td>대중탕용</td> <td>30</td> </tr> <tr> <td>산업용</td> <td>65</td> </tr> </tbody> </table> <p>주) 감경비율은 수도요금률 기준으로 감경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p> <p><계산 예></p> <p>1. 수도요금 100원이고 감경비율이 65%인 경우 최종 수도요금은?</p> <p>= 수도요금(100원) - 감경액(100원×65%=65원)</p> <p>= 35원 (최종 수도요금)</p>	구분	감경비율(%)	중수도		가정용	65	일반용	65	대중탕용	30	산업용	65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가정용	65																								
일반용	65																								
대중탕용	30																								
산업용	65																								
구분	감경비율(%)																								
	중수도																								
가정용	65																								
일반용	65																								
대중탕용	30																								
산업용	6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230
----------	-------

제안년월일 : 2019년 10월 24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하수도 사용에 따른 감경대상 및 면제대상 중 원인자부담금은 개인 하수시설 추가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 징수의 성격으로 감경 및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인상 계획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시점을 매년도 1월1일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화함.

주요골자

- “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를 “사용료·점용료·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사용료·점용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27조제4항)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 하단에 “연도별 단가 조정은 해당연도 1월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단서를 신설함.(안 별표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7조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 을 삭제한다.

안 제27조제4항 중 “원인자부담금을” 을 “수수료를” 로 한다.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1.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표 내용 중 “2020.1.부터” 를 “2020년” 으로 “톤당” 을 “m³당” 으로 하고, 표 하단에 “연도별 단가 조정은 해당연도 1월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의 단서를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u></p> <p>1.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p> <p>2. ~ 4. (생략)</p> <p><신설></p> <p>5. 「<u>장애인보장법</u>」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p> <p>6. (생략)</p> <p>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u>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u></p> <p>③ 시장은 <u>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u></p>	<p>제27조(감면 등) ① ----- ----- ----- <u>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감경-</u> ----- -----.</p> <p><삭제></p> <p>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4.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삭제></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u>제1항제1호 및 제2호</u> ----- <u>감경기준</u>----- --.</p> <p>③ -----<u>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u> --- ----- -----</p>	<p>제27조(감면 등) ① ----- ----- ----- <u>사용료·점용료·수수료를 감경</u>----- ----- -----.</p> <p>1. ~ 5.(개정안과 같음)</p> <p>② ~ ③(개정안과 같음)</p>

요금을 감면한다.(다만,
한 세대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모두 해당되
거나 한 세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
우에도 중복 감면하지 않
는다.)

<신 설>

----- 감경한다.-----

----- 감경하지 -----

④ 시장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에 대해서 사용료·점용
료·원인자부담금을 면
제할 수 있다.

④ -----

----- 수수료를 -----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고
	사용량 (m ³ /월)	m ³ 단가(원) 2017. 7. 부터	
가정용	1 ~ 20	180	
	21 ~ 40	270	
	41 이상	410	
일반용	1 ~ 50	330	
	51 ~ 100	415	
	101 ~ 300	545	
	301 ~ 1000	605	
	1001 이상	630	
대중 탕용	1 ~ 1000	290	
	1001 ~ 1500	350	
	1501 ~ 2000	435	
	2001 이상	510	
산업용	톤당	380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고
	사용량 (m ³ /월)	m ³ 단가(원)			
		2020.1. 부터	2021년	2022년	
가정용	1 ~ 20	210	250	300	
	21 ~ 40	320	390	460	
	41 이상	490	590	700	
일반용	1 ~ 50	390	470	560	
	51 ~ 100	500	600	700	
	101 ~ 300	660	790	920	
	301 ~ 1000	740	890	1,040	
	1001 이상	780	950	1,110	
대중 탕용	1 ~ 1000	340	400	480	
	1001 ~ 1500	420	510	610	
	1501 ~ 2000	520	630	750	
	2001 이상	620	750	890	
산업용	톤당	450	530	630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고
	사용량 (m ³ /월)	m ³ 단가(원)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용	1 ~ 20	210	250	300	
	21 ~ 40	320	390	460	
	41 이상	490	590	700	
일반용	1 ~ 50	390	470	560	
	51 ~ 100	500	600	700	
	101 ~ 300	660	790	920	
	301 ~ 1000	740	890	1,040	
	1001 이상	780	950	1,110	
대중 탕용	1 ~ 1000	340	400	480	
	1001 ~ 1500	420	510	610	
	1501 ~ 2000	520	630	750	
	2001 이상	620	750	890	
산업용	m ³ 당	450	530	630	

※ 연도별 단가 조정은 해당연도 1월1
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